



제 5 장

법조 유사직역

민호사정기본적의권
민호사정기본적의권
민호사정기본적의권
민호사정기본적의권
민호사정기본적의권



제5장 법조 유사직역

1. 법조 유사직역 현황

가. 자격사별 등록자 및 합격자 수 추이

[매년 말 기준 / 단위 : 명]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법무사	등록자	3,324	3,613	3,961	4,275	4,558	4,826	5,086	5,359	5,655	5,925
	합격자	80	101	100	100	121	122	123	121	120	120
변리사 ¹⁾	등록자	855	958	1,091	1,327	1,538	1,744	1,919	1,925	2,124	2,324
	합격자	121	200	202	204	200	203	225	202	219	226
세무사 ²⁾	등록자	3,710	4,104	4,704	5,380	5,984	6,518	7,037	7,600	8,117	8,698
	합격자	451	603	699	717	702	706	704	707	633	630
공인 노무사	등록자	993	1,197	1,345	1,406	1,682	1,860	2,004	—	—	1,487
	합격자	71	201	147	61	275	140	122	229	208	247
관세사	등록자	—	—	—	—	—	—	—	—	—	1,354
	합격자	74	94	77	140	75	75	75	75	75	86
공인 중개사	등록자	26,452	31,458	41,663	51,354	57,362	62,432	66,276	69,466	73,212	74,227
	합격자	15,080	19,144	29,636	1,258	30,680	16,603	10,496	19,593	16,117	15,719

【출처】· 등록자 수 : 대한법무사협회, 특허청, 한국세무사회, 노동부, 관세청, 국토해양부
· 합격자 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¹⁾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외)

²⁾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우리나라 법조 유사직역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6개 직역군으로 파악되며, 직역별 인원의 총수는 약 10만 명임.

나. 시장 규모

구분	법인 수	전체 종사자 수	총매출액	영업이익
법무사업	10	23,198	797,272	240,911
변리사업	54	6,255	342,894	62,485
세무사업	233	34,611	1,512,240	428,651
공인노무사업	351	—	—	—
관세사업	327	—	—	—
부동산중개사업	428	102,090	2,387,913	972,788

【출처】· 법인 수 : 대한법무사협회, 특허청, 한국세무사회, 노동부, 한국관세사회, 국토해양부(2009년 말 기준)

· 종사자 수, 총매출액, 영업이익 : 「2005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산업특성편 제Ⅲ권」, 통계청, 2007. 6. (2005년 말 기준)

- 2005년 기준으로 공인노무사와 관세사를 제외한 유사직역의 총 매출액은 5조 4백3억 1천9백만 원으로 변호사업 매출액(1조 2백5십5억 7천만 원, 통계청 자료 기준)과 합하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총 규모는 약 6조 6백5십억 원으로 추정됨.

2. 법조 유사직역의 직무 및 선발형태

가. 법무사

(1) 법원, 검찰청에 제출되는 서류나 양식의 작성 대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 대행을 할 수 없으나 경매 등 일부 특정 분야에 대하여는 신청대리 업무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법무사법 제2조).

- 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②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③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④ 등기 공탁 사건의 신청대리
- ⑤ 민사집행법의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⑥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2) 법무사는 자격시험을 통해서 선발되며 자격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정비율]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제1과목	• 헌법(40) • 상법(60)	• 민법(100)	• 구술시험 (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제2과목	• 민법(80)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형법(50) • 형사소송법(50)	
제3과목	• 민사집행법(70)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30)	• 민사소송법(70) •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 공탁법(40)	• 부동산등기법(70)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법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 직렬, 등기사무 직렬, 검찰사무 직렬 또는 마약수사 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나. 변리사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해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 업무를 행하는 전문자격사(변리사법 제2조)로서, 주요 업무는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출원, 등록업무 대행 및 특허심판원 심판절차 대행업무 등이다. 그러나 변리사법 제2조가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심결취소소송)까지도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의하여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변리사시험은 1,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포함)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포함)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5지 택일형)
제2차 시험	- 필수과목(3과목) - 특허법(조약 포함), 상표법(조약 포함),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1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주관식 필기시험

* 변리사법 제4조의3에 따라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변리사의 자격을 자동취득하나 변리사법 제3조에 따라 별도의 변리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세무사

(1) 납세자의 위촉에 의해 제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세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 ②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③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④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⑤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⑥ 「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⑦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2)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자격으로 세무사시험은 1,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재정학 -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회계학개론 -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중 택1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5지 택일형)
제2차 시험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2부(세무회계) -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한한다)]	주관식 필기시험

* 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취득하나, 2003년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고, 세무사의 명칭 또한 사용할 수 없다. 즉,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으로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다만, 법 개정 전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라. 공인노무사

(1)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관련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에의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 ①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②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 ③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④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2) 공인노무사는 자격시험을 통해서 선발되며 자격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필수과목(5) - 노동법(1), 노동법(2), 민법(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영어능력검정 시험성적으로 영어시험 대체) - 선택과목(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선택형 (5지 택일형)
제2차 시험	- 필수과목(3) -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선택과목(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주관식 필기시험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평점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면접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에 따라 노동행정예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 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노동행정예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 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

마. 관세사

(1)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 절차, 관세법상의 쟁의·소송 등을 대리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관세사법 제2조).

- ①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② 「관세법」 제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③ 「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④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⑤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⑥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⑦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
- ⑧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 ⑨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⑩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2) 관세사는 자격시험을 통해서 선발되며 자격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	객관식 선택형
	2교시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무역영어	
제2차 시험	1교시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주관식 논술형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관세평가	
	4교시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관세사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와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

바. 공인중개사

- (1)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격사로서, 자격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자격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객관식 선택형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의 범위 - 총칙 중 법률행위 -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 계약법 중 총칙 · 매매 · 교환 · 임대차 - 민사특별법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차 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 - 건축법 - 농지법	

- (2) 대법원 판례(2006.05.11. 선고 2003두14888)는 변호사법 제3조의 법률사무가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2005년 7월 30일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은 공인중개사에게도 법률사무인 부동산 경매대리권도 부여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법조 유사직역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해외 법조 유사직역 현황⁴

가. 일 본

1) 변리사 [弁理士]

(1) 일본 변리사의 업무는 특허청의 절차대리를 중심으로 하며, 그 외 일본 변리사법에 따른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다.

- 수입금지 신청절차 대리
- 공업소유권 관련 분쟁의 중재절차 및 화해절차의 대리
- 공업소유권 기술상의 노하우 매매계약의 체결 대리
- 공업소유권의 침해소송에 있어 보좌인으로서 심문
- 변리사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침해소송 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하고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그 내용의 부기를 받았을 경우, 특정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가 동일한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한해 그 소송대리인 가능

(2) 변리사 제도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특정 직역에 있는 자*에 한해서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 기술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변리사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약제사, 일반 건축사, 전 기주임기술자, 전기통신주임기술자, 정보처리기술자시험 합격자, 사법시험 합격자

(3) 변호사는 변리사로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라는 자격 그 자체로 당연히 변리사의 사무를 행할 수 있다(일본 변호사법 제3조 제2항). 이는 변리사의 업무가 변호사법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할 뿐이고 변리사라는 신분을 취득하는 것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변리사 명부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그 신분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변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세리사 [税理士]

(1) 일본의 세리사는 조세불복, 세무조정, 세무상담, 기장대행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여 보좌인으로서 조세에 관한 사항을 진술할 수 있다.

(2) 세리사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이 부여되는데, 학력이나 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사법시험이나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⁴ “사법개혁과 변호사 유사직역 현황”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2006

- (3) 세리사시험 합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과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경우이므로 등록만으로도 세무대리 업무 수행 및 세리사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 (4) 세무업무 또한 변호사법상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는 세리사 등록 없이 변호사의 자격으로 세무업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변리사와 마찬가지로 세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사법서사 [司法書士]

- (1) 일본 사법서사법 제3조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등기·공탁에 관한 절차대리
 - ② 법무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③ 법무국장에 대한 등기 또는 공탁에 관한 심사청구 절차의 대리
 - ④ 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⑤ 법률상담
 - ⑥ 간이재판소의 일정한 액수(간이재판소의 사무관할) 이하의 소송, 화해, 독촉, 증거보전, 민사조정 등 사건의 절차에 관한 대리
 - ⑦ 간이재판소 대리관 업무 중 민사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재판 외 화해에 대한 대리
- (2) 일본의 사법서사는 우리나라의 법무사와 동일하나 국내의 법무사가 법원의 감독 하에 있으면서 법원의 소송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사법서사는 법무성의 감독 하에 등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일본의 사법서사는 간이재판소 소액사건에 있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데, 동 소송대리권은 모든 사법서사에게 부여된 것은 아니고 100시간 이상의 사실 인정의 수법, 입증활동, 변론 및 신문의 기술, 윤리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법서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4) 사회보험노무사 [社会保険労務士]

- (1) 사회보험노무사는 노동 및 사회보험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작성 대행, 그 신청 수속 대행,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청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일본 사회보험노무사법 제2조). 나아가 행정기관의 조사 처분에 대하여 주장, 진술 대리 업무 및 노동관련 분쟁에서 분쟁 당사자를 대리를 할 수 있다. 일본은 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노동기준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50여 가지의 사회보험 법률이 있는데 사회보험노무사는 이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사업주가 겪는 종업원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 직장의 안전위생과 건강관리 혹은 일에 관한 교육과 훈련 등과 같이 종업원에 대해 사업주가 꾀하는 여러 종류의 후생복지, 대우 등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상담을 하

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도 사회보험노무사의 중요한 일이다⁵.

- (2) 사회보험노무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에 의해 선발되며, 사회보험노무사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여타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회보험노무사가 될 자격을 가진다.

나. 독 일

1) 세무사 [Steuerberater]

- (1) 독일의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세무사와 유사하나 조세소송과 조세형사소송에서의 대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독일 세무사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업무
장부기장 의무이행 시 조력업무	- 장부기장 및 결산 업무에 대한 조력행위 - 장부기입 대차대조표 및 손익 산정에 관한 감사
세무형사사건대리	조세행정청의 조세형사소송절차 및 과태료절차 수행 시 변호인으로서 업무수행
경영상담	기업의 설립, 법형식의 선택, 위치선정, 합병, 기업분할 및 경영과제, 조직상담, 전산상담, 보조금에 대한 상담, 특허상담 등
법률상담	세무사의 업무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법률상담 허용
조세소송 등의 대리	- 조세행정절차 대리 : 조세확정절차, 조세집행절차를 포함한 징수절차, 외부조사, 법원 이외에서 법률구조절차 - 조세소송절차 대리

- (2) 독일에서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세무업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세무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2) 변리사 [Patentanwalte]

- (1) 독일 변리사는 특허청, 특허법원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하는바,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상고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진술권만 부여되는 반면,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는 상고사건에서도 단독 대리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독일 변리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⁵ 김한준, 「한국직업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03

(2) 독일의 변리사는 이공계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 자격이 인정된다. 이공계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는 변리사의 감독 하에 특허사무소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 중에 변리사협회가 주관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독일 특허청의 4개월 및 독일 특허법원의 8개월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와 같이 3년간의 연수과정(특허사무소에서 2년, 특허청과 특허법원에서 1년)을 마친 자에 한하여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3) 독일 변호사는 변리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않지만 변호사의 자격으로 변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 프랑스

1) 공증인 [Notaires]

(1) 프랑스 공증인의 업무는 공정문서 작성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상담으로, 공증인이 되기 위하여는 법학 석사 자격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의 학위 소지자로서 공증인 학교(les ecoles de notariat) 또는 공증인 교육원(le centre national de l'enseignement professionnel notarial)을 수료하여야 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수습과정을 거치고 난 후 공증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프랑스의 법률서비스 제공자는 법조 종사자(le professionnel judiciaire)와 법률 종사자(le professionnel juridique)로 구분하는데, 법조 종사자는 소송절차에서 타인을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법률 종사자는 소송 외의 대리 및 보좌, 법률상담 또는 문서작성에 관한 업무 등과 같은 법률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변호사는 법조 종사자와 법률 종사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반면, 공증인은 법률 종사자 중 주법률 종사자(le professionnel juridique à titre principal: 법률업무를 부수적으로 하는 법률 종사자들과 구분하여 부르는 말)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는 공증인의 직무를 당연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기타

(1)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 유사한 국가 공인자격증 제도가 없다. 대신 변호사(Advocat), 공인회계사(Expert Comptable), 회계감사인(Commissaire Comptes), 공증인(Notaire) 등이 조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무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사실상 회계지식에 정통한 회계사가 기장대리 업무와 간단한 세금신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소송 지원이나 소송대리 업무 등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⁶.

6 박명호 · 기은선 · 김정아, 「외국의 세무사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 (2) 한편, 2009. 2. 11. 프랑스 상원에서 채택된 통합법률안(Loi relative à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justice et aux conditions d'exercice de certaines professions réglementées) 제32조에 따라 기존의 변리사가 변호사로 통합되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변리사는 변호사에 편입되는데, 통합법 시행일 당시 변리사 명부에 등록된 자는 그대로 소재지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부에 지적재산권 전문 표시를 하고 등록되어 별도의 시험이나 절차 없이 곧바로 변호사로 등록,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다. 새로운 통합 변호사는 기존에 변호사와 법률상담사 및 변리사에 각 귀속하였던 직무 모두를 함께 수행할 수 있고, 재판기관 및 징계기관에서 변호사의 독점적 소송 대리, 보좌권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4조는 새로운 통합 변호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기존 변리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 대리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라. 미 국

1) 등록대리인 [Enrolled Agent]

- (1) 미국의 경우 특별한 자격증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세무사와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연방 조세 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대한 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대리인,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바, 등록대리인의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자격이 주어지고 재무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반면,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는 주정부에서 자격을 부여한다. 미국 등록대리인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업 무
세무보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대한 세무보고 대리
세무계획	세무상 결과를 예측하여 최상의 세무계획을 세우도록 노력
국세청 실무	국세청에서 필요한 서류준비, 제출, 협의, 회의에서 의뢰인 대표 등
경영상담	그 밖의 경영 및 재정 관련 상담

- (2) 등록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등록대리인 시험(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우로서 세법과 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업무를 해 온 경우에는 시험이 면제된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국세청의 엄격한 자격조사를 거쳐 등록대리인이 될 수 있다⁷.

⁷ <http://www.irs.gov/taxpros/agents/article/0,,id=100710,00.html>

2) 변리사 [Patent Agent]

- (1) 미국의 특허 대리업무는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와 우리나라의 변리사라 할 수 있는 특허변리사(Patent Agent)가 수행하는바, 미국 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출원이나 항고심판 등을 대리할 수 있으나 상표업무는 관여할 수 없고, 특허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업무도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도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에서 전문가로서 증언은 할 수 있다.

[미국 특허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특허변리사의 비교]

구분	자격 요건	직무 내용
특허변호사 (Patent Attorney)	• Attorney 자격과 Patent Agent 자격 동시 소지자	• 지식재산에 관한 모든 법률서비스 가능
일반 변호사 (Attorney)	•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특허청에 대한 상표에 관한 사항 대리 • 법원 소송대리
특허변리사 (Patent Agent)	• 일정한 시험응시 자격자로서 특허청의 시험 합격자 • 특허청 심사관으로 4년 이상 종사자	•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 디자인에 관한 사항 대리

- (2) 특허변호사는 일반 변호사 중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Patent Bar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Patent Bar 시험은 이공계 경력을 가진 자들에 한하여 그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문계열 경력자들에게는 이공계 학점 이수를 한 경우나 FE(Fundamental of Engineering)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3) 관세사 [Customs Broker]

- (1) 미국 관세사는 통관업을 담당하게 되는데 통관업이라 함은 화물이 통관신고 및 허가, 상품의 분류와 평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 세금 또는 기타 비용의 부과, 지급과 환불, 서류의 작성, 서류의 전송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당국과 관련된 활동을 말하는 것(US Code Title 19, section 1641 (a)(2))이다.
- (2) 미국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격증의 요건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만 21세 이상, 현재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관세사시험(Customs Broker License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한다. 통과 후 자격증이 발급되면 세관 및 국경수비대(Customs & Boarder Protection)에 일정한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관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⁸.

⁸ http://www.cbp.gov/xp/cgov/trade/trade_programs/broker/brokers.xml

4. 변호사의 법조 유사직역 자격 등록 현황(2010. 5. 기준)

가. 전체 변호사의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등록 현황

[단위 : 명]

변호사 수	세무사		변리사	
	인원수	전체 변호사 수 대비 비율(%)	인원수	전체 변호사 수 대비 비율(%)
10,265	3,283	31.9	2,697	26.2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세무사와 변리사의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무사는 국세청에, 변리사는 특허청에 등록하면 세무사 또는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음. 다만, 지난 2003년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사법시험 46회 합격자부터는 세무사의 등록과 명칭 사용이 불가능함.
- 2010. 5. 현재 개업변호사 10,265명 중 3,283명(31.9%)이 세무사 등록을, 2,697명(26.2%)이 변리사 등록을 하여 세무사와 변리사로 각 활동하고 있음.

나. 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등록 현황

[단위 : 명]

변호사 수 (법인 수)	세무사 자격		변리사 자격	
	보유자수	전체 세무사 자격자 수 대비 비율(%)	보유자수	전체 변리사 자격자 수 대비 비율(%)
3,046 (99)	1,797	58.9	937	30.7

- 위 자료는 2010. 5. 기준 전체 530개 법인[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 472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58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99개 법인에서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 세무사 등록 변호사의 약 60%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변리사 등록 변호사는 약 31%가 법인 소속임.

